제 2026-050853 호
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(최초)[법인 등]

기 관 명	주식회사 한양종합기술 건설공사	
소 재 지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92((영평동) 제1동 2층)	
대표자성명	김동훈	
지정사항	**총 업무(지정) 한 계**	지정인력 6명 * 지도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 최대 4회, 월 최대 80회
	관 할 지 역 업무(지정) 한계	지정인력 6명 * 지도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 최대 4회, 월 최대 80회
	업무(지정) 지역	광주청 및 그 소속지청 관할지역 (광주, 전라도, 제주)

※ 준수사항

1.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2.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※ “지정사항” 및 “준수사항”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4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26. 9. 3.

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